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우리 군 인구증가대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전입장려를 위하여 생활관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6호)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안 제20조제1항제9호)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4번,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75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해당부서와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5.~11. 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령화 및”을 “고령화,”로 “군”을 “거창군”으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를 “셋째 이후 태아·출생아 건강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둘째아이 이상”을 “둘째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들”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 제목 “(지원내용 및 규모)”를 “(지원 내용과 규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둘째아이 이상 5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셋째 자녀부터”로 한다.

제7조제1호·제2호 중 “지급한다.”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가지급 할 수 있다.”를 “추가지급 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회 실시한다.”를 “두 번 집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회 전액 지급한다.”를 “한 번에 전액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를 “태아·출생아”로 “지급한다.”를 “분할지급”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신청 및 지원절차)”를 “(신청과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부등록”을 “임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참하여”를 “가지고”로 한다.

제11조 제목 “(지원대상 및 기준)”을 “(지원 대상과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둘째 이후 자녀 중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한다. 다만 전입세대 일 때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1. 둘째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지급
2. 셋째 자녀부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제13조 제목 “(신청 및 지원절차)”를 “(신청과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은 출생 또는 전입 후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 제목 “(지원내용 및 업무관장)”을 “(지원내용과 업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을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다만, 제8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 경우에는 예외(인구교육과)
 - 가. 학기별 30만원 이내
 - 나. 재학 중 최대 4번

제22조 제목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를 “(환수조치와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본”을 “이”로 한다.

제23조 중 “본”을 “이”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로 “예

산의 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6호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양육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2019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u>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 등으로 구분·시행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u>군</u>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u>둘째 아이 이상 자녀</u>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u>셋째 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과</u> 관련하여 <u>군과</u>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4. “영유아양육비”란 <u>군내에</u>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둘째 아이 이상</u>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9. (생략) 10.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u>군내에</u>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자</u>를 말한다. 11. (생략)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u>거창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u>자녀</u>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u>셋째 이후 태아·출생아 건강을</u> 위하여 <u>군과</u> 협약한 업체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양육비”란 <u>군내에</u>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둘째 이후</u>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9. (현행과 같음) 10.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u>군내에</u>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사람</u>을 말한다. 11. (현행과 같음) <p>제5조(지원 내용과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 범위에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1.~5. (생략)

6.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250만원 이내

제7조(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지급한다.

2. 임신부 영양제는 최대 7개월분을 지급한다.

3. 엽산제의 경우 임신부는 개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하되 임신이 될 때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다.

4. 삭제 <2009.6.10>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6.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1.~5. (현행과 같음)

6. 출산장려금: 5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7.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셋째 자녀부터 250만원 이내

제7조(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지급

2. 임신부 영양제는 최대 7개월분을 지급

3. 엽산제의 경우 임신부는 개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하되 임신이 될 때까지 추가지급 가능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접종

6.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한 번에 전액 지급

7.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

제8조(신청과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대상과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 중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둘째아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셋째아이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구교육과)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번)

<신 설>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한다. 다만 전입세대 일 때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1. 둘째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지급

2. 셋째 자녀부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제13조(신청과 지원절차) ①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 또는 전입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과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구교육과)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번)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다만, 제8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 경우에는 예외(인구교육과)

9.~11.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제22조(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학기별 30만원 이내

나. 재학 중 최대 4번

10.~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제22조(환수조치와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안 제5조제6호)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안 제20조제1항제9호)

- 1) 학기별 30만원 이내
- 2) 재학 중 최대 4번
- 3)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출산장려금	75	75	75	75	75	375
	대학생 생활관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	375	375	375	375	375	1,875

○ 산출기초 : 2018년 인원 기준 추정

- 첫째아이 150명 × 50만원 = 75백만원
- 기숙사생 500명(50퍼센트) × 60만원 = 300백만원

3. 관련의견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손 용 모